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國立醫療院賣却決定撤回促求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국립의료원매각결정철회촉구건의안

국립의료원은 6·25전쟁 당시 의료진을 파견했던 스칸디나비아 3국과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등의 지원으로 1958년 설립돼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료시혜의 참모습을 구현한 이후 1968년 우리 정부에 운영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줄곧 우리 나라 의학발전과 환자진료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대명사로 일컬어진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설립초기에는 첨단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서 각광을 받았다가 민간대형병원이 속속 설립됨에 따라 최근에는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보호환자가 주로 찾고 있으며, 심장수술, 언청이 교정수술, 만성 심부전증 환자의 수용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누적되는 경영적자와 공급의료시설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립의료원을 폐원하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립공급의료센터와 암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여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 시민의 의료시혜 축소와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저하가 우려됩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 비율을 보면 민간3차병원이 총 환자의 1% 이하를 진료하고 있는데 비해 국립의료원은 10%이상의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특히 무료인공신장 투석치료, 심장수술, 암환자 등록 등 국립의

료원이 수행해 온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진료기능을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행할 기관이 없는 실정이어서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본래 국립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본래 국립의료기관은 민간의료계가 담당하기 어려운 결핵, 정신병, 나병 등 특수질환을 비롯해 의료보호 등 저소득 시민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운영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립·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국립의료기관을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공의료의 사명을 포기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최근 일부에서나마 논의되고 있는 사보험 도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강제의료보험의 보완적 장치로 사보험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계층, 즉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시민의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또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스칸디나비아3국과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폐지 결정은 설립취지, 당사국 의견을 고려할 때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현재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 동안 국립의료원을 거쳐간 의사들로 구성된 국립의료원 동문회 및 현재의 종사인력은 물론 관련 업계, 단체의 심한 반발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탁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시설투자 부진, 첨단의료장비와 우수인력의 유치노력 부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경영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국립의료원 대각결정을 철회하여 국립의료원을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존속시키고 이와 더불어 국립의료원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거점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7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26. 서울特別市教育廳傘下學校給食施設運營및圖書館相助會運營에關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16時 11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特別市教育廳傘下學校給食施設運營 및 圖書館相助會運營에 關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教育委員會 소속 李英順議員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順議員 文化教育委員會의 李英順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조사는 1997년 2월 24일 본의원 의 50인의 요구로 서울市議會에 제출되어 議長으로부터 1997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동 행정사무조사를 97년 4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0일간에 걸쳐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상조회 운영 및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관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사를 통하여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은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를 강력히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조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학교급식시설운영및도서관상조회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997.9.

문화교육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행정사무조사 실시경위

1. 1997년 2월 24일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 의 5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제9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안번호 716)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 동 본회의에서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문화교육위원회에 구성·조사토록 하